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17
----------	------

2013년 7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4월 24일, 김광수(도봉2) 의원(찬성 13명)  
나. 회부일자 : 2013년 4월 26일  
다. 상정결과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광수(도봉2))

### 가. 제안이유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 및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역 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은 물론 사회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협동조합 기본법」,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결과(2013. 5. 1 ~ 5. 7) 1건 접수.

#### < 입법예고의견 >

평소 시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

최근의 핫 아이템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시세감면 조례가 마련된다니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듯합니다.

신설되는 제12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살펴보니,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50% 감면 조항이니, 대상만 다를 뿐 감면 혜택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입니다.

현재,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1항과 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8조2항에 따라 법인 설립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300% 중과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르면,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실정에 맞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아마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도 이를 근거로 하였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2항1호에 따르면 '상기한 중과세 적용대상'은 조례로 지방세 감면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분명히 명기되었기에, 취득세 50% 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가 2013.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특례제한법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조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충 여부 검토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조례로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도 3년 이내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상위법 상충 여부 검토 결과 및 감면 대상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윤 병 국)

-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 ※ 단서조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1.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부칙에 감면의 적용시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 입법취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과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법 제2조제1호)을 말함.<sup>1)</sup>

1) 협동조합에 대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소유회사’로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영리회사와 구별된다는 점임. 일반적으로 1인1표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조합원의 신규가입을 촉진하고 대주주가 없는 소유의 분산과 이용자 이익을 강조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됨.

- 본 개정안에서는 감면대상을 전체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법 제2조제3호, 제4조제2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배당금지 등의 측면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구별됨.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의 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하며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설립의 요건이 엄격함.

- ‘사회적협동조합’과 성격이 유사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감면받고 있으며,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2013. 3. 28일 공포·시행) 제14조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서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법인을 말함.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조(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시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신설·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2013년 5월 현재 서울시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은 17개로 출자금의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 초기단계로 대부분 부동산 소유 비중이 낮을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취득세 감면에 따른 시세입 감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유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2항1호에 따르면 '상기한 중과세 적용대상'은 조례로 지방세 감면이 불가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상충되지 않는지와 둘째, 상충되지 않는다면 시 조례로 사회적기업과 같이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도 3년 이내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었으나,

본 개정안은 중과세 배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경우 자치구세로 시 조례로 규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p> <p>제12조(협동조합에 대한 감면)</p> <p>「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ol>
<p>제12조~제21조(생략)</p>	<p>제13조~제22조(현행과 같음)</p>